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- 295호

중국 환경산업 진출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우리 녹색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『중국 환경산업 진출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(또는 컨소시엄)은 주관기관(KOTRA)을 통해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9월 16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 사업개요

1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(F/S) 지원

- “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” 사업은 해외 녹색 프로젝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
 - 녹색정책·환경규제 검토, 자금조달 방안, 경제성, 기술성 및 법률적 측면 등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
- 지원규모 : 3.6억 원, 12개 프로젝트 내외
- 지원분야 : 중국지역 대기정화, 수처리, 폐기물 등 환경분야 및 태양열,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효율 관련 프로젝트
- 지원대상 : 개별 중소기업 또는 컨소시엄 구성
 - 개별 중소기업, 중-중, 중(2개이상)-중견 컨소시엄 등

- ① 국내업체가 기획하여 **자체 개발**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 중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녹색 프로젝트
- ② 국내업체가 **해외 발주처와 수의계약**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 중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녹색 프로젝트
- ③ 공개입찰 추진중 또는 추진예정인 녹색 프로젝트

□ 지원조건

구 분	지원조건	비고
정부지원금	30백만원 이내	
정부출연금 비율	총사업비의 70% 이내	기업부담금 30%이상
사업기간	6개월이내	1개월 연장가능

* (정부지원) 외주용역비, 전문가자문 등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부문 지원
 (기업부담) 국내외여비 등 기업의 현장조사 비용

2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

지원내용 및 대상

가. 프로젝트 수주 컨설팅 지원

- 동 사업은 해외 녹색 프로젝트 수주시 컨설팅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
 - 계약체결, 법인설립, 기술이전, PF 금융컨설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

□ 지원대상 : 개별 중소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주 컨소시엄 대표기업

- ① 국내업체가 기획하여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 중 기업이 자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거나, 수주(개발)가 유망한 프로젝트
- ②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 중 전년도 타당성조사 지원결과 적격 판정한 녹색 프로젝트

나. 글로벌기업 벤더참여(납품공급) 컨설팅 지원

- 동 사업은 글로벌기업 벤더참여(납품공급) 시 컨설팅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
 - 현지 시장·정책·통관·유통 조사, 벤더등록 다큐멘테이션, 납품거래 조건 협상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- ① 대형 녹색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글로벌 기업(1차 벤더 포함)에 부품·소재를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- ② 해외 기업에 녹색기술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지원규모 및 조건

- 지원규모 : 1억 원, 5개 과제 내외
- 지원분야 : 중국지역 대기정화, 수처리, 폐기물 등 환경분야 및 태양열,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효율 분야
- 지원조건

구 분	지원조건	비고
정부지원금	20백만원 이내	
정부출연금 비율	총사업비의 70% 이내	기업부담금 30%이상
개발기간	5개월 이내	1개월 연장가능

2 자격요건

- (주관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(중-중 컨소시엄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
- (중-중견 컨소시엄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그 이외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

3 지원절차



* (총괄기관) 중소기업청, (주관기관)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
4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및 최종선정

- 과제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병행
-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및 우대가점으로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우선 지원 순위를 결정

$$\text{종합평점} = \text{대면평가 점수} + \text{우대가점}$$

-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, 지원예산 규모, 신청기업(권소기업)의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및 후보과제를 최종 선정
- 후보과제 지원은 사업 포기, 협약 미체결, 협약 중단 등의 과제가 발생한 경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

※ 기타 세부사업별 평가방법은 관리지침에 정한 사항에 따름

5

신청제한 및 지원제외

□ 신청기업(또는 컨소시엄) 지원 제한

- 신청기업(또는 컨소시엄)의 프로젝트(사업) 업종이 탄소저감 및 에너지효율 등에 기여하는 녹색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- 신청과제가 세부 사업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, 동일기업의 기수행 및 정부 유사 지원사업으로 기지원된 경우
- 신청기업(또는 컨소시엄),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이 정부지원사업 등에 있어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의무사항 불이행,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 6.1 “신청 또는 지원 제한 사항”을 참조

6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14년 9월 16일 ~ 10월 10일(18:00까지)

□ 접수방법 : 해외자금기관협의회 홈페이지(www.fskorea.or.kr)에 온라인 신청 및 첨부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

※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

□ 접수처 : 주관기관(KOTRA) 기후변화사업팀

KOTRA
(기후변화사업팀)

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(구: 염곡동 300-9)
(우편번호 : 137-749)

□ 신청서류 양식

○ 신청서류 양식 확인 및 공고
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/지원정책/기술)
- KOTRA 홈페이지(www.kotra.or.kr) 사업안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
- 해외자금지원기관협의회 홈페이지(www.fskorea.or.kr) 자금지원사업신청/공고

○ 제출서류

- 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부 (CD 1장)
- 신청기업(대표기업)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신청기업(대표기업)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
- 신청기업(대표기업) 및 참여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- 신청기업(대표기업) 및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및 업무분장표 1부 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 해당)
- 기타 증빙자료 (우대가점 증빙, 유사사업 실적, 사업계획서 내용 증빙자료 등)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
-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
- 우편물 표지에 신청하는 사업명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

7

기타사항

- 중소기업 또는 컨소시엄 대표기업은 2개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, 선정은 기업이 희망하는 1개 사업만 선정
- 동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「2014년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관리지침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향후 일정

서류검토	2014년 10월 초 ~ 10월 중
선정평가	2014년 10월 넷째 주
협약체결	2014년 10월 마지막 주 ~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- 문의처
 - 사업 관련 관리지침 등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(042-481-4402)나 KOTRA 기후변화사업팀(02-3460-7887)으로 문의

기 관	담당부서	연락처
중소기업청	생산혁신정책과	042-481-4402
KOTRA	기후변화사업팀	02-3460-7887

- ※ 붙임 1. 2014년도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(별첨)
2. 중국 환경산업 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1부. 끝.